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2
- 다. 상 정 일 자 : '97. 2. 25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송기채
- 나. 제정이유
 - 소하천 정비법이 '95. 1. 5 법률 제4873호로 공포되어 동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 점용료등 허가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정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하천의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키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점용(소하천)하천 부속물의 점용, 유수의 점용, 지하수의 유수 채취, 배수(주수), 토석, 사력채취,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기타 점·사용료 결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하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인 하천으로 소하천의 점용등에 관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키 위한 절차상 소하천의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별표의 과세 시가의 표준액이라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고,
-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다소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95년 12월

15일자로 조례 제정을 위한 소하천 지정 고시후 의결시점 현재에 이르는
조례 제정 공백기간이 긴점등 시정이 요망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부. 끝.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97 - 8
----------	--------

제출년월일 : 1997. 2. 4.

제 출 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1995. 1. 5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하천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안 2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을 징수

○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안 3조)

- 공작물의 설치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지시가표준액의 6/100
- 벼 및 특수작물의 재배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중 저렴한 금액
- 식물의 재식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점용료등의징수대상)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 3 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 5 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사력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제 6 조 (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7 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9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소하천점용료등산정기준표

【별표 1】

구 분	산 정 기 준
<p>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하 "인근지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p>
<p>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p>	<p>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1976. 8.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립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p>

구 분	산 정 기 준
	<p>토석, 사력등을 채취할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 액의 1.5/100</p> <p>마. 관로등 설치를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 액의 5/100</p> <p>바. 야작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 액의 10/100</p> <p>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 토지과세지가 표준액의 3/100</p>
3. 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사업 연액 제곱미터/sec당 100,000 또는 이룬 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액</p> <p>나.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용수포함)</p> <p>관경 25m/m 이하 월액 5,000원</p> <p>관경 50m/m 까지 월액 20,000원</p> <p>관경 75m/m 까지 월액 30,000원</p> <p>관경100m/m 까지 월액 50,000원</p> <p>관경200m/m 까지 월액 60,000원</p>

구 분	산 정 기 준
	<p>관경300m/m 까지 월액 80,000원 관경400m/m 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500m/m 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600m/m 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700m/m 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800m/m 까지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최대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톤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등을 적용 다. 농업용수 0.05 ~ 0.5톤/sec까지 연액 10,000원 0.5톤/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p>
5. 지하수의 유수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톤 ~ 200,000톤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 군수가 정하는 금액</p>

구 분	산 정 기 준
7. 토석·사력의 채취	<p>가.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p> <p>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 금액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p>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것은 제4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하다.

소하천점용료등감면기준

【별표 2】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4. 한군수자원공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0퍼센트
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비율